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목 차>

1.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작 성 자	이름	이동순
	담당부서 (과)	유적발굴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종희		연락처	042-481-3131
	과장	김동대		이메일	eds1013@korea.kr

2024. 10. 17.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규제조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별표4, 별표5																	
	3.위임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0.24~2024.12.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추진배경)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이나 진단 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신설(‘25.2.14.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처분기준 마련</p> <p>○(정부개입 필요성) 영향진단이나 진단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일원화 및 기존 유사처분과 형평성 고려 필요</p>																	
	7.규제내용	<p>○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조사기관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발굴허가 제한, 등록제한 처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2: 영향진단 부실 조사기관 및 책임자 발굴허가 제한 - 별표4: 영향진단을 거짓으로 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조사기관 및 책임자 업무정지 - 별표5: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등록취소된 조사기관 등록제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p>매장유산 조사기관 및 관련자(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24.9 월말 현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조사기관</td> <td>169개</td> </tr> <tr> <td>피규제자</td> <td>대표자</td> <td>169명</td> </tr> <tr> <td>피규제자</td> <td>조사단장</td> <td>219명</td> </tr> <tr> <td>피규제자</td> <td>책임조사원</td> <td>471명</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조사기관	169개	피규제자	대표자	169명	피규제자	조사단장	219명	피규제자	책임조사원	471명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조사기관	169개																
피규제자	대표자	169명																	
피규제자	조사단장	219명																	
피규제자	책임조사원	471명																	
9.규제목표	<p>○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이나 진단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조사기관과 그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처분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p> <p>○ 매장유산 및 국가지정유산 보호기반 강화</p>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이나 진단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한 조사기관과 그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 예외기 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 제여부 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 세부기 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 정여부	일몰조 문	연장여 부
		미설 정		
		일몰 유형	일몰 설정 기간	일몰 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p> <p>I. 일반기준 1.~2. (생략)</p> <p>II. 개별기준</p>			<p>■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p> <p>I. 일반기준 1.~2. (현행과 같음)</p> <p>II. 개별기준</p>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허가 제한 기간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허가 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3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3년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3년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3년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u>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u>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2년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u>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11조에 따른 진단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u>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2년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1년 2년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1년 2년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	법 제12조제3항,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	법 제12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제25조 제1항 제4호	1년 2년	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제25조 제1항 제4호	1년 2년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 제1항 제5호	1년 2년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 제1항 제5호	1년 2년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 제1항 제6호	6개월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 제1항 제6호	6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등록취소 된 경우 나.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 제1항 제7호	6개월 3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등록취소 된 경우 나.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 제1항 제7호	6개월 3개월
<신 설>			9.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 제1항 제8호	1년 2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무정지 중인 경우</u></p> <p>10.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 제1항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p> <p>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u>1년</u></p> <p>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u>2년</u></p>																																				
<p>■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p> <p><u>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u></p> <p>I. 일반기준</p> <p>1. ~5. (생 략)</p> <table border="1" data-bbox="172 1108 785 2056"> <thead> <tr> <th>위 반 행 위</th> <th>근거 법조문</th> <th>업무정지 처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td> <td>법 제25조 제1항제4호</td> <td>·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td> </tr> <tr> <td>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td> <td>법 제25조 제1항제4호</td> <td>·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td> </tr> <tr> <td>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td> <td>법 제25조 제1항제5호</td> <td>·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td> </tr> <tr> <td>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td> <td>법 제25조 제1항제6호</td> <td>6개월</td> </tr> <tr> <td>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td> <td>법 제25조</td> <td>3개월</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법 제25조	3개월	<p>■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p> <p><u>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u></p> <p>I. 일반기준</p> <p>1. ~5. (생 략)</p> <table border="1" data-bbox="801 1124 1433 2056"> <thead> <tr> <th>위 반 행 위</th> <th>근거 법조문</th> <th>업무정지 처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td> <td>법 제25조 제1항제4호</td> <td>·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td> </tr> <tr> <td>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td> <td>법 제25조 제1항제4호</td> <td>·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td> </tr> <tr> <td>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td> <td>법 제25조 제1항제5호</td> <td>·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td> </tr> <tr> <td>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td> <td>법 제25조 제1항제6호</td> <td>6개월</td> </tr> <tr> <td>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td> <td>법 제25조</td> <td>3개월</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	법 제25조	3개월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법 제25조	3개월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	법 제25조	3개월																																			

현행			개정안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1항제7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1항제7호	
<신설>			6.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8호	·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
<신설>			7.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8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p>■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9. 26.>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p> <p>I. 일반기준 1. ~2. (생략)</p> <p>II. 개별기준</p>			<p>■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9. 26.>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p> <p>I. 일반기준 1. ~2. (현행과 같음)</p> <p>II. 개별기준</p>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등록제한기간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등록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3. 고의나 중과실로 <u>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u>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2년	3. 고의나 중과실로 <u>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u>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2년
4. 별표 4 I. 일반기준 제5호에 해당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6개월	4. 별표 4 I. 일반기준 제5호에 해당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6개월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국가유산영향진단법('24.2.13. 제정)」에 따른 영향진단*이나 진단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25조제1항에 신설('24.2.13.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처분 기준 마련

*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시행자가 요청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

**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제출한 영향진단 보고서(지표조사 또는 유존지역 평가, 영향검토(해당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당 초	개 정(2024.2.13.)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고의나 중과실로 <u>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u> 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 <u>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u> (이하 “ <u>진단보고서</u> ”라 한다)를-----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정부개입 필요성) 영향진단이나 진단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일원화 및 기존 유사 처분*과 형평성 고려 필요

* 현행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 처분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 제25조제1항에 영향진단을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영향진단은 현행 매장유산법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유존지역 협의(평가)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보존 영향 검토를 통합,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영향진단 후 진단보고서를 제출함.

※ 영향진단(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 1 또는 2 반드시 포함)

1. 지표조사(지표조사 미실시 지역, 3만㎡이상(의무), 3만㎡미만(필요시, 지자체))
2. 유존지역 평가(기 지표조사 결과 유존지역, 관계전문가 2명이상 검토서 첨부)
3. 국가지정유산 보존 영향검토(해당 시, 관계전문가 3인상 검토서 첨부)

- 영향진단은 지표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지표조사나 지표조사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작성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 있음.

※ '25.2.14.이후 지표조사와 영향진단 비교

조사 목적	관련법령	조사명칭
-------	------	------

국가·지자체가 국가유산 매장·분포여부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매장유산법	지표조사
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개인 등)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사 전에 매장유산과 국가지정유산 보존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지표조사 포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영향진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매장유산 조사기관	입법예고 후 간담회 예정		

3. 규제목표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이나 진단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조사기관과 그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매장유산 및 국가지정유산 보호 기반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은 매장유산 조사기관만 수행하도록 규정(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조)함에 따라,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부실하게 수행한 조사기관에 대한 처분 필요

※ 영향진단(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 필수(1번 또는 2번), 3번 해당시)

1. 지표조사(지표조사 미 실시 지역, 3만㎡이상(의무), 3만㎡미만(필요시, 지자체))
2. 유존지역 평가(기 지표조사 결과 유존지역, 관계전문가 2명이상 검토서 첨부)
3. 국가지정유산 보존 영향검토(해당 시, 관계전문가 3이상 검토서 첨부)

- 조사기관은 현행 매장유산법에 따른 지표조사만 수행하였으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으로 ‘유존지역평가’와 ‘국가지정유산 보존 영향검토’도 함께 수행하여야 함.

영향진단	수행주체	
	기존 (매장유산법·문화유산법)	변경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지표조사	조사기관	조사기관
유존지역 평가*	국가 또는 지자체(4천㎡ 이하)	조사기관
국가지정유산 보존 영향검토**	지자체	조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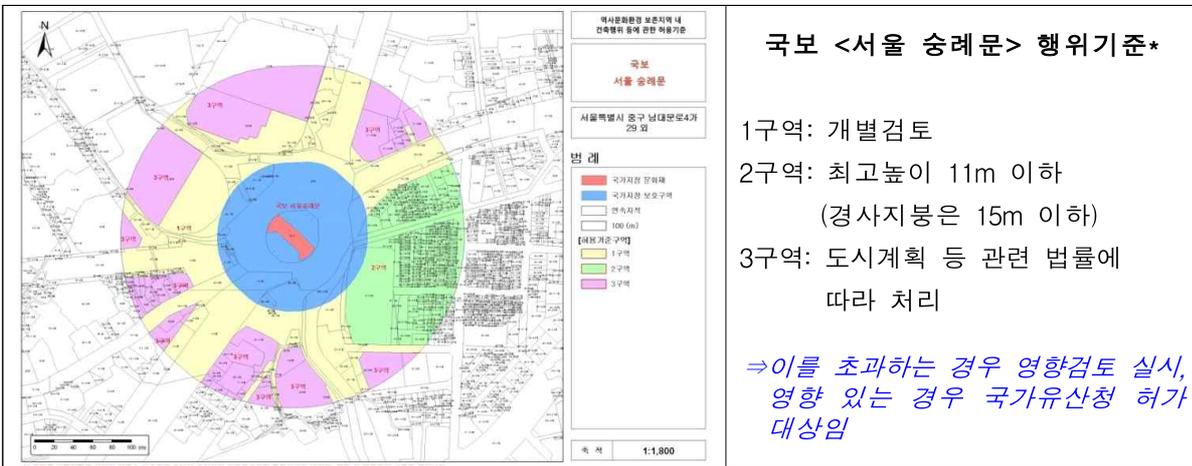
* (유존지역 평가) 과거 지표조사가 완료된 지역에서 유존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에 대하여 보호방안(현상보존, 참관조사, 발굴조사)을 관계전문가 2명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는 것

** (국가지정유산 보존 영향검토)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변 500m 이내)에서 행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영향을 미칠 우려 여부 및 저감조치 방안을 관계전문가 3인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는 것

- ‘유존지역 평가’와 ‘국가지정유산 보존 영향검토’는 현행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 실시하였으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공적개념의

공정성·객관성·도덕성 필요

- ‘유존지역 평가’와 ‘영향검토’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할 경우 매장유산 및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 심각.
- 특히, 건축행위(높이 등)가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고시된 행위기준*(국가유산 거리별 높이규제)을 초과할 경우, 관계전문가 3인의 의견을 들어 영향여부를 마련함에 있어 거짓이나 부실한 방법으로 검토할 경우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영향진단’을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조사기관에 대한 처분은 최소한 현행 ‘지표조사’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조사기관에 대한 처분수준으로 정할 필요 있음.
- 특히, ‘25.2.14.이후 매장유산법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지표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조사기관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있으며, 위반정도가 경미할 경우 경감(1/2)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비례성 확보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I. 일반기준

1.~ 3.(생략)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5. (생략)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국가유산청이 조사기관의 진단보고서를 직접 검토(필요시 지자체장 또는 매장유산 전문가 자문)함에 따라 행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수반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전담기관인 매장유산 조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지표조사” 거짓 또는 부실에 따른 처분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함으로써 유사처분 간 형평성 고려할 필요 있으며,
- 영향진단 부실방지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매장유산 및 국가지정유산 보존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